

의안번호	2220186
의 퇴 인	조경태 의원
회 답 일	2026.8.19.
추 계 번호	26B379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에 700만원, 2032년에 7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3,600만원(연평균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안 제20조의2)	7	7	7	7	7	36	7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향후 실제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신설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농장을 말한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제2항)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0조의2(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	• 공식추계 - 유사 사례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스마트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규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민간위원 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은 2/3으로 가정하여 산출
 - (회의 개최 횟수) 분기별로 연 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참석 사례비) 안전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비는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되,¹⁾ 회의참석 사례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추정치): 2028~2032년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민간위원 수(A, 명)	6	6	6	6	6	—
회의 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 참석 사례비(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소계(D=A×B×C, 백만원)	7	7	7	7	7	36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향후 실제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 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